

22년 법인세 신고대비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 · 감면 제도 안내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 · 감면 제도 안내



공제 · 감면 Contents

- I 고용 지원 (5개)
- II 투자촉진 지원 (6개)
- III 중소기업 지원 (3개)
- IV 연구인력 개발 (3개)
- V 기타 지원 (5개)

참고자료

[상시근로자,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 세액공제 · 감면 중복적용 배제]

I . 고용 지원 조세 특례

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5.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2년(중소·중견기업 3년)간 세액공제 적용

적용대상·공제액

- (대상)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법인 사업자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 (공제액)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 다음의 금액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 등* 상시근로자	1,100만원	1,300만원	800만원	9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	

* 청년(15세 ~ 29세), 노령자(60세 이상), 장애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 받은자

사후관리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1차 연도) 종료 후 2년 이내에 1차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①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 적용배제, ② 감소한 과세연도에 감소인원 × 1인당 해당 공제액을 추가납부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개요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공제받은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1년 추가 공제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 (공제액) 증가인원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다음의 공제율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의 총급여액 × 약 10% (사회보험료율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구 분	청년 등 상시근로자	그 외 상시근로자	
		신성장서비스업*	기타
공제율	100%	75%	5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물류산업 등



사후관리

- 공제기간 중에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22.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①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 적용배제, ② 감소한 과세연도에 감소인원 × 1인당 해당 공제액을 추가납부



3.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개요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 정규직 전환 : 기간 정함없이 근로계약 체결,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중소기업에게 제조 등을 위탁한 사업자가 직접 고용 등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 · 중견기업
- (공제액)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1인당) × 다음의 공제액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제액	1,000만원	700만원

사후관리

-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 근로관계 종료한 과세연도에 종료한 인원의 세액공제액을 법인세에 추가 납부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사업자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 (공제액)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 × 다음의 기본 공제율) +
[㉡](해당 과세연도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 × 다음의 추가 공제율)}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본 · 추가 공제율	20%	10%	5%



사후관리

- ㉡ 추가공제 시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 근로관계 종료한 과세연도에 종료한 인원의 추가공제액을 법인세에 추가 납부

5.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 ① 경력단절여성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2년간 세액공제 적용
- ② 육아 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중소기업
 - ① 해당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서 임신 · 출산 · 육아등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내에 고용
 - ②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경과 후 복직
- (공제액)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 다음의 공제율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경력단절여성 고용 · 육아휴직자 복직*	30%	15%

* 육아 휴직자 복직의 경우 자녀 1명당 한차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사후관리

- 육아휴직 복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 ① 근로관계 종료한 과세연도에 종료한 인원의 세액공제액을 법인세에 추가 납부



II. 투자촉진지원 조세특례

1. 통합투자세액공제
2. 생산성향상시설 투자등에 대한 세액공제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등에 대한 세액공제
4. 환경보전시설 투자등에 대한 세액공제
5.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 통합투자세액공제 (기존 10개 투자세액공제를 통합)

제도개요

-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완료일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20·'21년 투자분은 종전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선택하여 공제 가능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 법인(조합법인 제외) 사업자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차량 등 조특칙 별표1 제외), 특정 시설 · 업종 관련 유 · 무형자산에 투자
- (공제액) {당해연도 투자액 × 공제율}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3년 평균 투자액) × 3%(국가전략 4%)}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제율(일반)	10%	3%	1%
공제율(신성장기술)	12%	5%	3%
공제율(국가전략) '21.7월 투자분부터~	16%	8%	6%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3년 평균 투자액) × 3%(국가전략 4%)} 은 (당해연도 투자액 × 공제율) 의 2배 한도 적용

사후관리

-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내(특정 시설 · 업종 유 · 무형자산 중 건축물 등 5년)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 ① 사유발생시 세액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日 0.025%)을 가산하여 납부

2.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완료일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20·'21년 투자분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하여 공제 가능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아래의 대상자산에 투자한 법인 사업자
 - ① 공정개선 · 자동화 · 정보화 시설 및 첨단기술설비(舊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 ② 공급망 관리 시스템설비(자재조달, 생산계획, 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
- (공제액) 신규*로 구매하는 자산 × 다음의 공제율
* 중고품, 운용리스, 기존설비에 보수 또는 자본적 지출, 국가등의 지원금 수령에 의한 투자는 제외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제율	10%	5%	1%



사후관리

-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 · 임대한 경우
 - ① 사유발생시 세액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日 0.025%)을 가산하여 납부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완료일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20·'21년 투자분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하여 공제 가능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아래의 대상자산에 투자한 법인 사업자

- ① 에너지절약형 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7), ② 중수도 및 절수설비·기기
- ③ 신·재생 에너지 생산설비의 부품 등 제조시설(舊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4)

- (공제액) 신규*로 구매하는 자산 × 다음의 공제율

* 중고품, 운용리스, 기존설비에 보수 또는 자본적 지출, 국가등의 지원금 수령에 의한 투자는 제외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제율	7%	3%	1%



사후관리

-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임대한 경우

- ① 사유발생시 세액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日 0.025%)을 가산하여 납부



4. 환경보전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완료일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20·'21년 투자분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하여 공제 가능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아래의 대상자산에 투자한 법인 사업자
① 환경보전시설(舊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5)
- (공제액) 신규*로 구매하는 자산 × 다음의 공제율

* 중고품, 운용리스, 기존설비에 보수 또는 자본적 지출, 국가등의 지원금 수령에 의한 투자는 제외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제율	10%	5%	3%



사후관리

-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 · 임대한 경우
① 사유발생시 세액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日 0.025%)을 가산하여 납부

5.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원훈련용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완료일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20·'21년 투자분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하여 공제 가능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아래의 대상자산(운휴중인 자산 제외)에 투자한 법인 사업자
 -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 · 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 (공제액) 신규*로 구매하는 자산 × 다음의 공제율
* 중고품, 운용리스, 기존설비에 보수 또는 자본적 지출, 국가등의 지원금 수령에 의한 투자는 제외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제율	7%	3%	1%



사후관리

-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 · 임대한 경우
 - 사유발생시 세액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日 0.025%)을 가산하여 납부



6.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완료일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20·'21년 투자분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하여 공제 가능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아래의 대상자산에 투자한 법인 사업자
 - ①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 ② 종업원용 기숙사, ③ 종업원 휴식·체력단련 등 시설, ④ 사내 부속 의료기관, 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등(舊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9), ⑥ 직장어린이집
- (공제액) 시설투자* 금액 × 다음의 공제율
* 시설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구입, 중고품 투자 허용, 기존설비에 보수 또는 자본적 지출, 국가등의 지원금 수령에 의한 투자는 제외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직장어린이집
공제율	10%	5%	3%	10%

사후관리

-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임대 또는 5년 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 ① 사유발생시 세액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日 0.025%)을 가산하여 납부

III. 중소기업지원 조세특례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개요

-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감면 적용

적용대상 · 감면액

- (대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① 감면대상 업종(48개)을 영위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 (감면액)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다음의 감면율

구분	제조업 등		도·소매, 의료업		지식기반산업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수도권 내
중기업	-	15%	-	5%	10%
소기업	20%	30%	10%	10%	-

* (감면한도) 1억원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 5백만원

사후관리

-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 없음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개요

-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5년간 세액감면 적용



적용대상 · 감면액

- (대상) 감면대상 18개 업종을 영위하는 다음의 창업중소기업
 - ① 창업중소기업(청년 · 생계형 창업기업 포함),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③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④ 창업 과세연도 포함 4년 이내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 기업
- (감면액)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다음의 감면율

구 분	일반창업		벤처 · 에너지신기술기업		청년 · 생계형 창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기본	신성장	기본	신성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	50%(5년)	75%(3년)+50%(2년)	50%(5년)	50%(5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0%(5년)	75%(3년)+50%(2년)	50%(5년)	75%(3년)+50%(2년)	100%(5년)	50%(5년)



사후관리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①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 배제



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 중소 · 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는 하는 제도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 · 중견기업

- ① 구매대금 중 현금성 결제액(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높을 것
- ② 약속어음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않을 것

- (공제액)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이 60일 이내) × 다음의 공제율

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	15일 이내	16일 ~ 60일
공제율	0.2%	0.1%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영수증



사후관리

-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 없음



IV. 연구인력개발 조세특례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연구 · 인력 개발비를 지출한 법인 사업자
- (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해당비용 × 다음의 공제율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일반중소	유예기업	일반중견	코스닥중견	
일반 (선택)	당기분	25%	~3년차 15%, ~5년차 10%	8%		~2%
	증가분	50%		40%		25%
신성장 · 원천기술		30%~40%		20%~30%	25%~40%	20%~30%
국가전략기술('21.7월 지출분부터)		40%~50%		30%~40%		30%~40%



사후관리

-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창작) 전담부서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 배제



2.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 ①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 약정하고 지급하는 성과급
 - ② 영업이익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 ③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하지 아니할 것
- (공제액)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 다음의 공제율

구분	경영성과급 지급 중소기업
공제율	10%

–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50% 감면

* 제외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최대주주 ·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등



사후관리

-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 없음



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개요

-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
 - ① 출자대상 :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 · 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출자
 - ② 출자방법 : 기업 설립시 자본금 납입 또는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대금 납입
- (공제액) **출자지분 취득금액 × 공제율**

구 분	내국법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제외)
공제율	5%

* 제외 :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후관리

-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사유발생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日 0.025%)을 **가산**하여 납부

V. 기타 지원 조세 특례

1.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2.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4.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5.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제도개요

- 사회적기업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5년간 세액감면 적용



적용대상 · 감면액

- (대상)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법인 사업자
- (감면액)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다음의 감면율

구 분	사회적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3년간	100%	100%
그 다음 2년간	50%	50%
감면 한도	1억원 + 취약계층* 상시근로자수 × 2천만원	1억원 + 장애인 상시근로자수 × 2천만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북한이탈 주민 등이 해당



사후관리

- 사회적 기업 인증 취소,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미달 또는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 ①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배제 및 이자상당액(日 0.025%)을 가산하여 납부



2.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도개요

-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7년간 세액감면 적용



적용대상 · 감면액

- (대상) 감면대상업종* 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법인 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 18개)

- (감면액)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다음의 감면율

구 분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그 다음 2년간
감면율	100%	50%

* 감면한도(중소기업 외 적용) : (가) + (나)

(가) 감면 해당 과세연도까지 사업용자산 투자액 × 50%

(나)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및 서비스업의 상시근로자 2천만원)



사후관리

- 감면대상 과세연도 후 2년내에 감면대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

① 해당사유 발생 과세연도에 감소인원에 1천5백만원(청년 등 2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 납부



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적용대상 · 공제액

- (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사업자
 - *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 임대상가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업종 제외,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자
- (공제액) 해당 과세연도 임대료 인하액* × 다음의 공제율
 -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료에서 실제로 차감한 임대료 금액

구 분	법인
공제율	70%



사후관리

- 임대료를 인하한 과세연도와 다음연도 6월까지 인하 직전대비 임대료 ·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 ① 인하한 과세연도에 사유 발생시 세액공제 적용배제 ② 인하한 다음 과세연도에 사유 발생시 이미 공제받은 세액 추징



4.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개요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최대 10년간 세액감면 적용



적용대상 · 감면액

- (대상) 공장이전 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법인 사업자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및 해운중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 2년)이상 계속 사업하고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한 기업일 것
 -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할 것
- (감면액)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다음의 감면율

구 분	7년간 (성장관리권역 · 광역시 등 5년간)	3년간 (성장관리권역 · 광역시 등 2년간)
감면율	100%	50%



사후관리

- 이전 후 ①사업 미개시, ②3년 이내 폐업 · 해산, ③수도권에 동일한 공장을 설치한 경우
 {① · ③ 5년 이내 감면된 세액 납부, ② 3년 이내 감면된 세액 납부} + 이자상당액(日 0.025%)을 가산하여 납부



5.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개요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최대 10년간 세액감면 적용



적용대상 · 감면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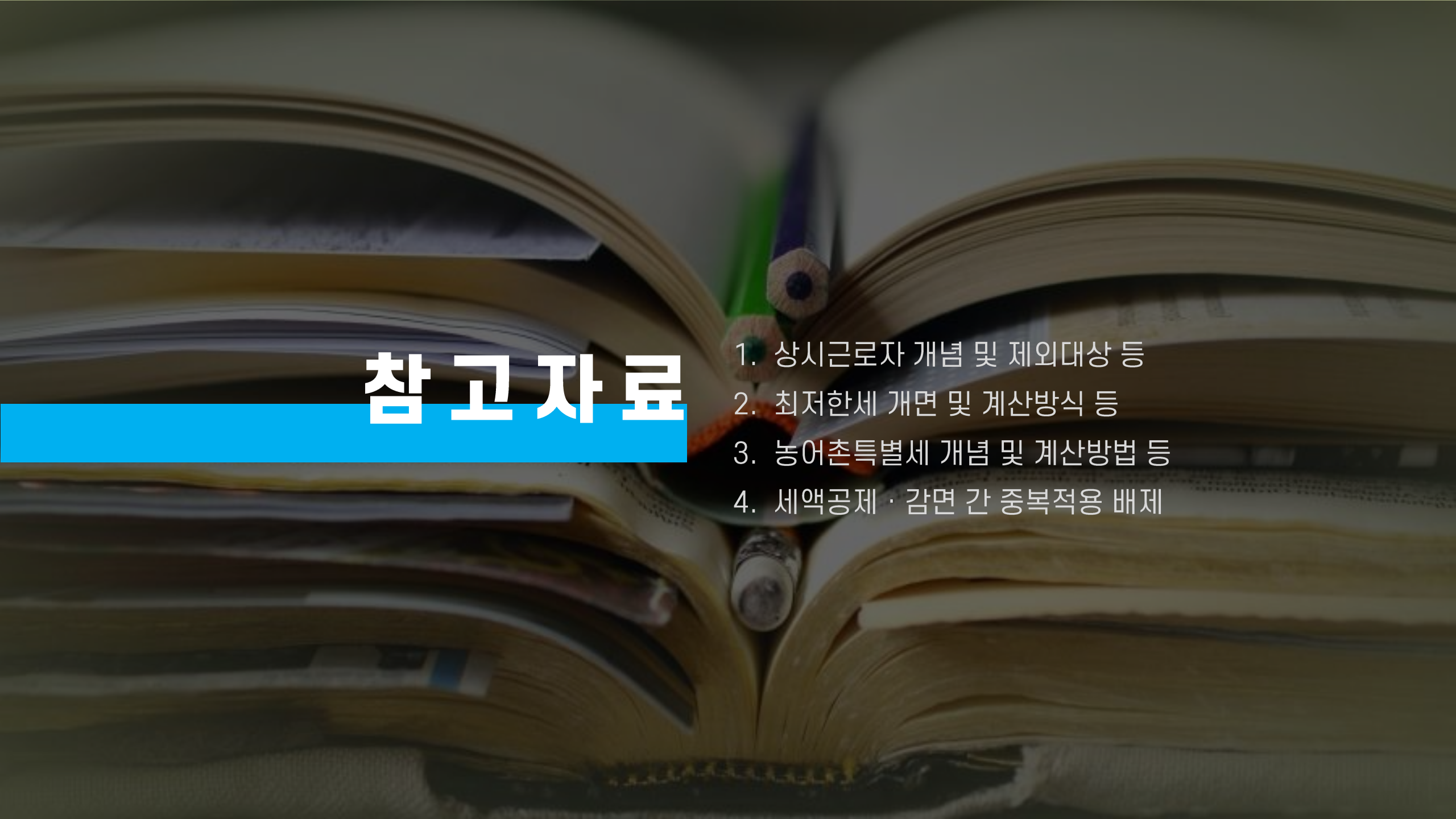
- (대상) 본사이전 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법인 사업자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및 해운중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두고, 이전 후 2년 내 본사 양도 또는 본사 양도 후 2년 내 사업개시 할 것
 - 이전 전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할 것
- (감면액)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다음의 감면율

구 분	7년간 (수도권 연접지역 등 5년간)	3년간 (수도권 연접지역 등 2년간)
감면율	100%	50%



사후관리

- 이전 후 ①사업 미개시, ②3년 이내 폐업 · 해산, ③수도권에 본사를 설치, ④이전본사 임원수가 50% 미달한 경우
 {① · ③ · ④ 5년 이내 감면된 세액 납부, ② 3년 이내 감면된 세액 납부} + 이자상당액(日 0.025%)을 가산하여 납부



참고 자료

1. 상시근로자 개념 및 제외대상 등
2. 최저한세 개면 및 계산방식 등
3. 농어촌특별세 개념 및 계산방법 등
4. 세액공제 · 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01. 상시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또는 제17조 제1항



상시근로자 개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상시근로자 제외대상(표준)

- ①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제외), ③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임원, ④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⑤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⑥ 원천징수 미이행자 중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사회보험 등 미납자, ⑦ 총급여 7천만원 이상 근로자*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에만 적용됨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 ÷ 과세연도 개월 수

*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0.5명, 일정요건 충족 근로자는 0.75명

※ 특수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 창업한 경우 : 0

- 합병 · 분할 · 사업양수 등인 경우 : 기존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

01. 상시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또는 제17조 제1항



상시근로자 관련 법인세 공제 · 감면은 21개,
공제 · 감면별 상시근로자 제외기준을 별도로 규정함

< 상시근로자 제외기준 >

- ①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제외),
③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임원, ④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⑤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
⑥ 원천징수 미이행자 중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사회보험 등 미납자, ⑦ 총급여 7천만원 이상 근로자*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에만 적용됨

< 상시근로자 관련 공제 · 감면 유형 >

- ㉠ 고용증가시 세액공제, ㉡ 고용유지시 세액공제, ㉢ 고용증가시 추가감면(감면비율 추가),
㉣ 고용증가시 감면한도 증가, ㉤ 고용감소시 감면한도 축소

순번	상시근로자 관련 공제 · 감면 유형	조특법 조항	공제 · 감면	공제 · 감면시 상시근로자 제외기준 적용 여부	
				① ~ ⑥	⑦
1	㉠ 고용증가시 세액공제	§ 29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2		§ 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3	㉡ 고용유지시 세액공제	§ 19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	○
4		§ 29의3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5		§ 29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01. 상시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또는 제17조 제1항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 · 감면 제도 안내

순번	상시근로자 관련 공제 · 감면 유형	조특법 조항	공제 · 감면	공제 · 감면시 상시근로자 제외기준 적용 여부	
				① ~ ⑥	⑦
6	㉞ 고용유지시 세액공제	§ 30의3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7	㉡ 고용증가시 추가감면	§ 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8	㉠ 고용증가시 감면한도 증가	§ 12의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	×
9		§ 64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	×
10		§ 85의6	사회적기업 기업에 대한 감면	○	×
11		§ 85의6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	×
12		§ 99의9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	×
13		§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	×
14		§ 121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	×
15		§ 121의17	기업도시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16		§ 121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	×
17		§ 121의21	금융중심지 창업 등에 대한 감면	○	×
18		§ 121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업 등 감면	○	×
19		§ 121의22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	×
20	㉡ 고용감소시 감면한도 축소	§ 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
21		§ 99의1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	○	×

참고 1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사례

① '21년 직원 현황('21.1월초 기준 상시근로자 10명, 연중 입사자 4명, 연중 퇴사자 1명)

번호	이름	입사일	퇴사일	총급여	비고	번호	이름	입사일	퇴사일	총급여	비고
1	정부가	'09.08.01	-	65백만원	근로계약 1년 이상	8	박순진	'20.01.01	-	15백만원	급여원천징수 미이행
2	임소득	'09.09.01	-	64백만원	근로계약 1년 이상	9	야무진	'20.03.03	-	12백만원	월 48시간 근무
3	유소비	'09.10.01	-	63백만원	근로계약 1년 이상	10	강소유	'19.05.06	'21.03.15	20백만원	근로계약 1년 이상
4	김원천	'09.11.01	-	62백만원	근로계약 1년 이상	11	이준수	'21.04.30	-	20백만원	근로계약 1년 미만
5	나법인	'10.01.01	-	60백만원	최대주주	12	원강직	'21.05.01	-	35백만원	근로계약 1년 이상
6	조세심	'10.01.01	-	40백만원	감사	13	유성실	'21.07.01	-	35백만원	근로계약 1년 이상
7	나모범	'18.01.01	-	50백만원	나법인의 자	14	김영민	'21.10.01	-	75백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상

② 상시근로자 계산 (67명 ÷ 12개월 = 5.58명)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월초 근로자	10	10	10	9	10	11	11	12	12	12	13	13	
입사(+)				+1 ^{이준수}	+1 ^{원강직}		+1 ^{유성실}			+1 ^{김영민}			
퇴사(-)			△1 ^{강소유}										
월말 근로자	10	10	9	10	11	11	12	12	12	13	13	13	
상시근로자 제외자*	5 ¹⁾	5 ¹⁾	5 ¹⁾	6 ²⁾	6 ²⁾	6 ²⁾	6 ²⁾	6 ²⁾	6 ²⁾	6 ²⁾	6 ²⁾	6 ²⁾	
상시근로자 최종	5	5	4	4	5	5	6	6	6	7	7	7	67

1) 나법인(최대주주), 조세심(임원), 나모범(최대주주 직계존비속), 박순진(원천징수 미이행자), 야무진(단시간 근로자),

2) 1)에 이준수(1년 미만 근로자) 추가

※ 김영민(총급여 75백만원)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시에만 상시근로자 수 제외(본 사례 포함)

참고 2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사례 (‘20년 고용 감소시 추가납부 유예 적용)

< 2020년 고용감소시 추가납부 유예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⑤⑥⑦, ’21.3.16. 개정 >

구분	종 전	개 정
사후 관리	’18년(’19년) 대비 ’20년에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20년에 추가납부*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해당 상시근로자 공제세액	’20년에 추가납부 유예
세액 공제 적용	’18년(’19년) 대비 ’20년에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20년부터 세액공제 배제	’20년에 세액공제 배제 {’18년(19년)대비 고용유지시 ’21년(’22년)에 세액공제 가능}
	’18년(’19년) 대비 ’20년에 상시근로자를 유지한 경우	
	’20년에도 세액공제 적용	’20년에도 세액공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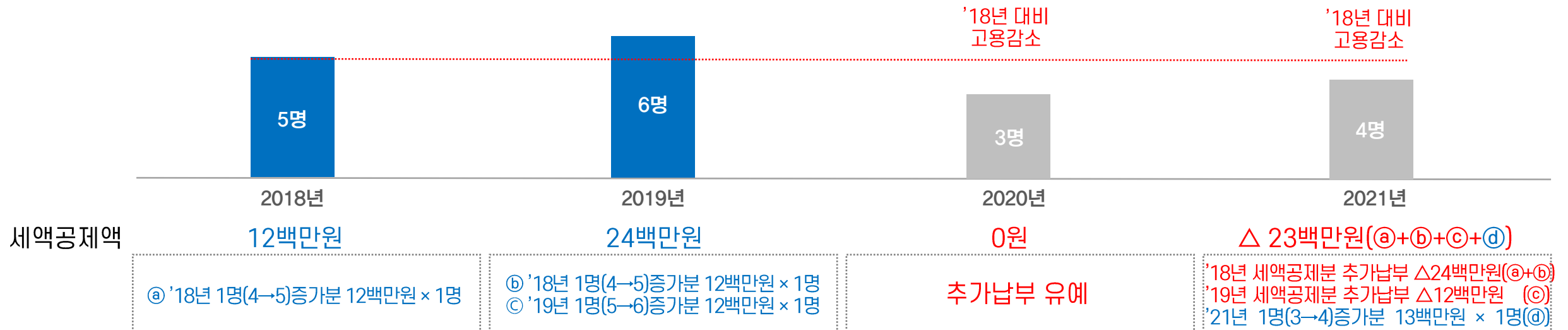
참고 2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사례 (‘20년 고용 감소시 추가납부 유예 적용)

[1 - ①] 수도권 밖 중소기업이 2018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 적용

‘18년 대비 ‘20년 고용 감소(5명 → 3명), ‘21년 고용 감소(5명 → 4명)한 경우

년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1차년도	2차년도	유예	3차년도
청년 상시 근로자수	4명	5명	6명	3명	4명

* 청년 1인당 12,000,000원 공제 (2021년 귀속 청년 1인당 13,000,000원 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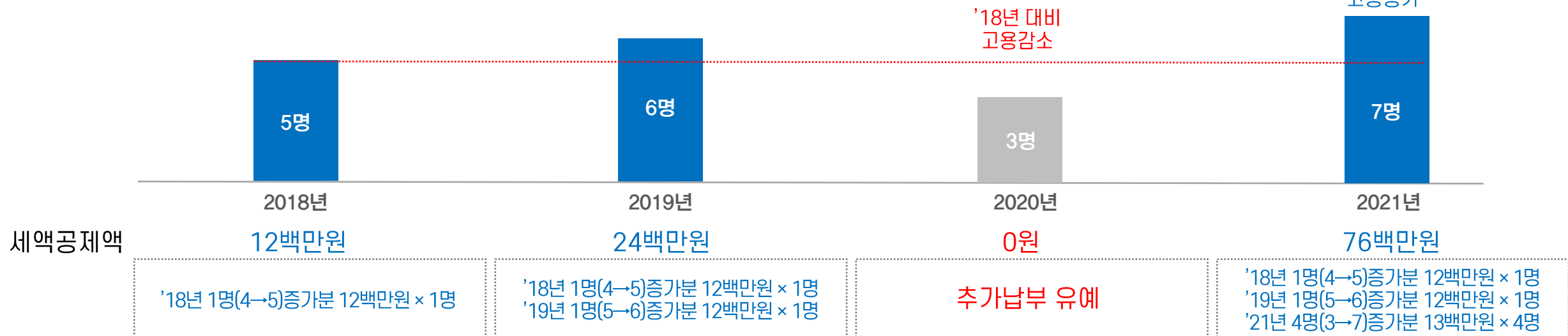
참고 2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사례 (‘20년 고용 감소시 추가납부 유예 적용)

[1 - ②] 수도권 밖 중소기업이 2018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 적용

‘18년 대비 ‘20년 고용 감소(5명 → 3명), ‘21년 고용 증가(5명 → 7명)한 경우

년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1차년도	2차년도	유예	3차년도
청년 상시 근로자수	4명	5명	6명	3명	7명

* 청년 1인당 12,000,000원 공제 (2021년 귀속 청년 1인당 13,000,000원 공제)



참고 2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사례 (‘20년 고용 감소시 추가납부 유예 적용)

[2 - ①] 수도권 밖 중소기업이 2019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 적용

‘19년 대비 ‘20년 고용 감소(5명 → 3명), ‘21년 고용 감소(5명 → 4명), ‘22년 고용 증가(5명 → 7명)한 경우

년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1차년도	유예	2차년도	3차년도
청년 상시 근로자수	4명	5명	3명	4명	7명

* 청년 1인당 12,000,000원 공제 (2021년 귀속 청년 1인당 13,000,000원 공제)

‘19년 대비
고용증가

‘19년 대비
고용감소

‘19년 대비
고용감소

7명

5명

3명

4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2백만원

0원

1백만원(㉔+㉕)

52백만원

세액공제액

㉔ ‘19년 1명(4→5)증가분 12백만원 × 1명

추가납부 유예

‘19년 세액공제분 추가납부 △12백만원(㉔)
‘21년 1명(3→4)증가분 13백만원 × 1명(㉕)

‘19년 고용증가분 세액공제 배제(‘21년 종결)
‘21년 1명(3→4)증가분 13백만원 × 1명
‘22년 3명(4→7)증가분 13백만원 × 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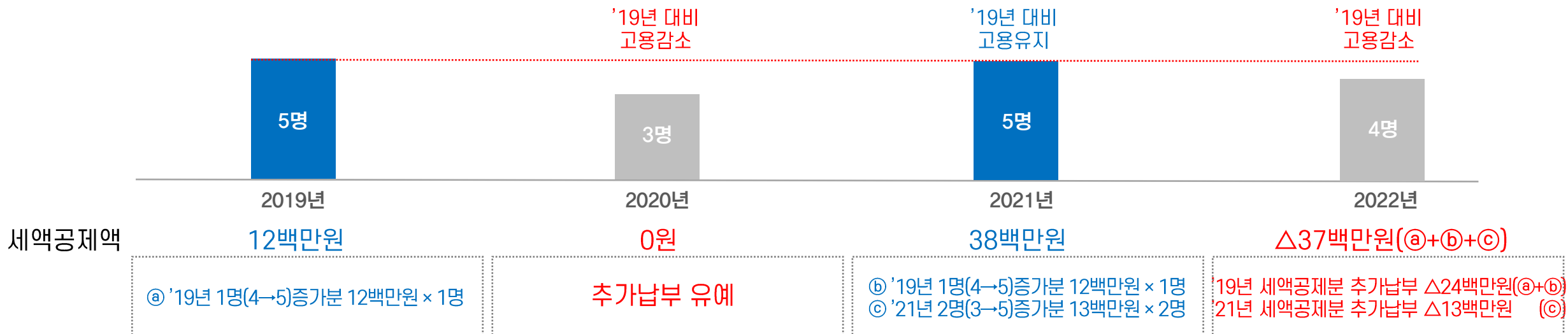
참고 2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사례 ('20년 고용 감소시 추가납부 유예 적용)

[2 - ②] 수도권 밖 중소기업이 2019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 적용

'19년 대비 '20년 고용 감소(5명 → 3명), '21년 고용 유지(5명 → 5명), '22년 고용 감소(5명 → 4명)한 경우

년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1차년도	유예	2차년도	3차년도
청년 상시 근로자수	4명	5명	3명	5명	4명

* 청년 1인당 12,000,000원 공제 (2021년 귀속 청년 1인당 13,000,000원 공제)



참고 2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사례 ('20년 고용 감소시 추가납부 유예 적용)

[2 - ③] 수도권 밖 중소기업이 2019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 적용

'19년 대비 '20년 고용 감소(5명 → 3명), '21년 고용 유지(5명 → 5명), '22년 고용 증가(5명 → 7명)한 경우

년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1차년도	유예	2차년도	3차년도
청년 상시 근로자수	4명	5명	3명	5명	7명

* 청년 1인당 12,000,000원 공제 (2021년 귀속 청년 1인당 13,000,000원 공제)

'19년 대비
고용증가

'19년 대비
고용감소

'19년 대비
고용유지

7명

5명

3명

5명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64백만원

38백만원

0원

12백만원

세액공제액

'19년 1명(4→5)증가분 12백만원 × 1명
'21년 2명(3→5)증가분 13백만원 × 2명
'22년 2명(5→7)증가분 13백만원 × 2명

'19년 1명(4→5)증가분 12백만원 × 1명
'21년 2명(3→5)증가분 13백만원 × 2명

추가납부 유예

'19년 1명(4→5)증가분 12백만원 × 1명

02. 최저한세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제도 개념

조세감면(공제, 감면, 비과세 등 포함)을 적용 받더라도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세금



최저한세 계산방식(다음 중 큰 금액)

- ①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조세감면을 적용 받은 후 세액
- ②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조세감면을 적용 받기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최저한세 세율

중소기업			그 외		
일반	유예기간				
	1~4년	5~6년	과표 100억원 이하	과표 1,000억원 이하	과표 1,000억원 초과
7%	8%	9%	10%	12%	17%

※ 최저한세 적용 시 조세감면 배제 순서

- 신고 : 납세자 자진 선택
- 결정 :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소득공제 · 비과세

02. 최저한세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 · 감면 제도 안내

참고자료



최저한세 적용대상 주요 세액공제 · 감면

- 내국법인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외국법인이 적용대상 (당기순이익 과세규정 적용 조합법인 제외)

순번	감면 유형	조특법 조항	조세감면제도	순번	감면 유형	조특법 조항	조세감면제도
1	세액 공제	§ 7의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13	세액 공제	§ 30의3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2		§ 7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4		§ 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		§ 10	R&D 세액공제(중소기업 제외)	15		§ 32④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4		§ 12②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16	세액 감면	§ 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100% 감면 외)
5		§ 12의4	기술혁신형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17		§ 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6		§ 13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8		§ 12의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50% 감면)
7		§ 19①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19		§ 31④⑤	창업중소기업 등의 통합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8		§ 24	통합투자세액공제	20		§ 32④	창업중소기업 등의 법인전환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9		§ 29의3	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21		§ 63	공장의수도권인(밀역제한역제외) 이전감면(중소기업)
10		§ 29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2		§ 64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1		§ 29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3		§ 96의2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2		§ 30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24		§ 99의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50% 감면)

02. 최저한세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 · 감면 제도 안내

참고자료



최저한세 적용제외 주요 세액공제 · 감면

- 내국법인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외국법인이 적용대상 (당기순이익 과세규정 적용 조합법인 제외)

순번	감면 유형	조특법 조항	조세감면제도	순번	감면 유형	조특법 조항	조세감면제도
1	세액 공제	§ 10	R&D 세액공제(중소기업)	14	세액 감면	§ 85의6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2		§ 96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15		§ 99의9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100% 감면)
3		§ 100의18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	16		§ 99의11	감염병 피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4		§ 104의32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17		§ 104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5		§ 126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8		§ 121의2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6	세액 감면	§ 6⑦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100% 감면)	19		§ 121의2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7		§ 12의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100% 감면)	20		§ 121의4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8		§ 6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감면	21		§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조세감면(100%감면)
9		§ 63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22		§ 121의9	제주투자진흥지구등입주기업조세감면(100%감면)
10		§ 63의2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23		§ 121의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100% 감면)
11		§ 68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24		§ 121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100%감면)
12		§ 85의6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25		§ 121의22	국가식품클러스터입주기업에 대한 감면(100%감면)

03.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 개념

농어업 경쟁력강화 등에 필요한 자원 확보 목적으로 법인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세목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조세감면*으로 인한 감면세액에 20%

* 비과세소득, 세액감면 · 세액공제, 소득공제, 조합법인 등에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요 세액공제 · 감면

영농 · 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정규직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R&D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감염병 피해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세액감면,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04. 세액공제 · 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 · 감면 제도 안내



중복적용 배제 개념

과다한 조세지원을 조절하기 위해 **한 과세기간**에 각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적용**을 제한



동일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배제(선택하여 공제 가능)

- ①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vs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②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vs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동일 과세연도에 주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순번	감면 유형	조특법 조항	조세감면제도	순번	감면 유형	조특법 조항	조세감면제도
1	세액 감면	§ 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세액 공제	§ 8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2		§ 7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		§ 13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		§ 63①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3		§ 24	통합투자세액공제
4		§ 63의2①	수도권 밖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4		§ 25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5		§ 85의6	사회적기업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감면	5		§ 30의4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7와는 중복가능)
6		§ 104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6		§ 104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국민이 편안함, 보다 나은 국세행정

감사합니다

